

# 용역 입찰 공고(긴급)

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추진하는 「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건축 건물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용역」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0일

대한임상병리사협회

## 1. 입찰 개요

- 가. 입찰건명 :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건축 건물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용역
- 나. 수행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
- 다. 입찰방법 : 제한경쟁(총액) / 협상에 의한 계약
- 라. 입찰방식 : 이메일 접수 (kam@daum.net)
- 마.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: 2024년 12월 10일(화) 15:00
- 바.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: 2024년 12월 23일(월) 15:00
- 사.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: 2024년 12월 23일(월) 15:00

## 2. 입찰 및 계약방식

- 가. 제한경쟁(총액) /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
- 나. 제안서 제출
  - 제출방식 : 이메일 제출
  - 제출처 : kamt@daum.net
- 다. 제안서 평가
  - 평가방법 : 서면 평가 (내부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  -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합니다.  
다만, 내부사정에 의해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.
  -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.

### 3. 입찰참가자격

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.

①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,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(‘법인’을 포함)로 최근 5년 내 대한민국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또는 외국 정부 발주 설계공모에서 2건 이상 당선 실적이 있는 자

※ 이 중 1건 이상은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업무시설 당선 실적을 포함해야 함

※ 각 실적에 대한 건축사 자격증, 당선 통지서, 계약서 또는 수주 내역 등 명확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함.

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디자인전문회사(종합디자인전문회사, 환경디자인전문회사에 한함) 면허를 보유한 자

③ 본 사업은 공동수급(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)을 허용하며, 공동수급자는 모두 ①과 ② 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,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0% 이상으로 하여야 함.

※ 응모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함.

### 4.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

가. 제출일시 : 2024년 12월 23일(월) 15:00 (제안서 제출 마감일)

나.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kamt@daum.net)

다. 제출서류

구분	서류명	유의사항
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	① 입찰참가신청서	첨부서식
	②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	유효 기간 확인 필요 특별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관련 증명서류 제출
	③ 사용인감계	
	④ 법인인감증명서 원본	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
	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	
	⑥ 사업자등록증명 원본	
	⑦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
	⑧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	
제안서	⑨ 제안서	제안요청서에 따름

## 5. 과업내용

### 가. 과업범위

- (준공검사)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축건물 준공검사
- 건축, 전기, 설비 등 필요한 건축 분야 전문가단 구성
- 건축분야 전문가단 현장 확인
- 준공된 건축물의 설계도면 준수 여부 확인
- 적절한 시공진행 여부 점검
- 건축물의 적정성, 하자 여부 등 검토
- (공사비 적정성 검토) 시공사 도급공사비 적정성 검토
- 공사비 산출내역(입찰 시) 및 시공사의 준공 도급공사비 산출내역과 본 용역업무에 따른 공사비 산출내역 비교분석 및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분석(마감재 관련 공사비 포함, 주요 공종별 비교검토 포함)
- 종합보고서 작성

### 나. 산출물

- 내역서
- 일위대가
- 중기단가
- 단가대비표
- 각 공종별 수량산출서
- 입찰 시, 준공 시 각각을 기준으로한 주요 공종별 공사비 내역산출 및 시공사 공사비와 비교검토서 및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분석 보고서
- 순공사비원가계산서

## 6. 그 밖의 사업시행자 등이 정하는 사항

가.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협회의 결정에 따름.

나.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당 협회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7. 문의

가. 문의처 :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국(02-3291-5435)

- 최현지 행정지원국장 070-7660-0942(직통)